

# 『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제정한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의 근거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02. 04. 폐지되었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, 존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 폐지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도시계획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    타 : 해당 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### ○ 본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」 은

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근거 법령인 「도시계획법」이 2002. 02. 04. 폐지되어,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략
- 5. 토   론   요   지 : 생     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음
- 7. 심   사   결   과 : 원안가결